

2021년 10월 22일 발행인·편집인 : 이용섭·김용만 발행처 : (우) 61945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111 (치평동) 전화 (062) 613-6343 팩스 (062)613-2129

광주광역시 규칙 제3255호

광주광역시 공무원 행동강령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광주광역시 공무원 행동강령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10월 22일 광주광역시장

광주광역시 공무원 행동강령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공무원행동강령 운영지침」을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으로 한다.

제3조 중 “공무원 및 시에 배치된 공중보건의사”를 “공무원”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7호 중 “300만원 이상”을 “공무원 자신과”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을 “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을 함께하는 행위 등”으로, “서면으로 신고”를 “신고”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항에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사전에 신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접촉을 마친 날부터 5일 내에 신고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14조의3의 제목 “(골프 및 사행성 오락행위 제한)”을 “(골프 등 사적 접촉 제한)”으로 한다.

제14조의3제1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와 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 등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적절한 사적인 접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의3제1항 단서 중 “골프를”을 “골프 등을”로, “별지 제15호”를 “별지 제12호”로, “골프 종료”를 “골프 등 종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4항”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에 대한 면담·감독 등 대면 접촉 업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업무 시간 내에 사무실 등 공적인 장소에서 수행하여야 하며 사적인 접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부서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사전 보고 후 하여야 하며 사전에 보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료 후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의2제2항 중 “알려야”를 “별지15호의2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알려야”로 한다.

제22조 및 제25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28조제1항 중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가권익위원회”를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로 한다.

제32조제3항을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광주광역시 공무원 행동강령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

1. 개정이유

- 청렴도 향상을 위해 직무관련자와 사적 접촉 제한을 강화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행정의 신뢰 확보

2. 주요내용

- 직무관련자와의 대면 접촉은 업무시간 내 사무실 등 공적인 장소에서 수행하도록 함 (제14조의3)
- 사적 이해관계 신고범위 강화 (제5조)
- 개정된 상위법령에 따라 법령 제목과 일부 중복되는 조문 등을 변경·삭제 (제1조, 제3조, 제10조, 제22조, 제25조의2, 제28조, 제32조)

광주광역시 규칙 제3256호

광주광역시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규칙

광주광역시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10월 22일 광주광역시장

광주광역시 사무위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광주광역시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규칙 ◆

1. 개정이유

- 기존 위임사무와 유사한 사무에 대한 관할기관을 통일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항 변경 사항을 일부 개정

2. 주요내용

- 자원순환과 소관 위임사무 추가 (별표)
- 자원순환과 및 에너지산업과 조항표기 수정 (별표)

[별표]

구청장에게 제위입하는 사무

소관부서	위 입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수입기관
자치행정과	1. 구단위이하의 주민등록전산정보의 출력자료에 관한 승인권	주민등록법시행령 제2조제2항	구청장
회 계 과	1. 은닉 국유재산의 조사 및 환수	국유재산법 제77조	
평 화 기 반 조 성 과	1. 북한이탈주민의 거주지 보호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설치·운영 나. 지역사회관련 각종 정보·자료제공 등 보호대상자의 지역사회편입지원 다. 지역사회내 사회복지서비스기관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라. 기타 거주지에서의 자립·정착에 관한 사항 (의료·생활보장, 직업훈련·취업알선, 주택교환, 학력확인서, 교육보호대상자 증명 발급, 결연·후원추진, 무연고사망자처리) 마.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설치·운영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 시행령 제42조와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 시행령제49조 같은법시행령 제49조 같은법시행령 제49조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여 성 가 족 과	1.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정·관리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5조, 12조제1항, 시행령 제4조	
출 산 보 육 과	1.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 2. 아동복지법 제3조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및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보육시설에 설치된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 가. 철거 명령 나. 자료 제출 명령 및 현장조사 실시 다. 사용중지·개선 또는 철거의 명령 라. 자료 제출 및 보고의 명령 마. 검사 및 질문 바. 검사 또는 질문의 일시·이유 및 내용 등을 포함한 계획의 통지 사. 과태료의 부과·징수	아동복지법 제15조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제16조 제3항 같은법 제22조제2항 같은법 제22조제3항 같은법 제23조제1항 같은법 제23조제2항 같은법 제23조제3항 같은법 제31조제1항	
소관부서	위 입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수입기관
출 산 보 육 과	아. 제출 기한의 연장 차. 조사계획의 통지 차. 자료 제출 또는 보고 기한의 연장	같은법시행령 제14조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14조제3항 같은법시행령 제15조제2항	구청장
건강정책과	1. 정신요양시설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설치허가 및 변경허가 나. 폐지·휴지·재개신고의 수리 다. 개선·사업정지·시설의 장 교체 명령 및 허가취소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 같은법 제24조 같은법 제25조	
감 염 병 리 관 리 과	1. 물수마약 처분 등에 관한 권한 2.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설치된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 가. 철거 명령 나. 자료 제출 명령 및 현장조사 실시 다. 사용중지·개선 또는 철거의 명령 라. 자료 제출 및 보고의 명령 마. 검사 및 질문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3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6조제3항 같은법 제22조제2항 같은법 제22조제3항 같은법 제23조제1항 같은법 제23조제2항	

	마. 검사 또는 질문의 일시·이유 및 내용 등을 포함한 계획의 통지 사. 과태료의 부과·징수 아. 제출 기한의 연장 차. 조사계획의 통지 차. 자료 제출 또는 보고 기한의 연장	같은법 제23조제3항 같은법 제31조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14조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14조제3항 같은법시행령 제15조제2항	
식품안전과	1.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복육장업을 하는 자의 영업소,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는 자의 영업소에 설치된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 가. 철거 명령 나. 자료 제출 명령 및 현장조사 실시 다. 사용중지·개선 또는 철거의 명령 라. 자료 제출 및 보고의 명령 마. 검사 및 질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6조제3항 같은법 제22조제2항 같은법 제22조제3항 같은법 제23조제1항 같은법 제23조제2항	
소관부서	위 입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수입기관
식품안전과	마. 검사 또는 질문의 일시·이유 및 내용 등을 포함한 계획의 통지 사. 과태료의 부과·징수 아. 제출 기한의 연장 차. 조사계획의 통지 차. 자료 제출 또는 보고 기한의 연장	같은법 제23조제3항 같은법 제31조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14조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14조제3항 같은법시행령 제15조제2항	구청장
기 후 환 경 정 책 과	1. 수질환경보전에 관한 다음의 권한(단, 국가 및 지방산업단지 안의 사업장과 1-3종 사업장은 제외) 가.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및 신고(변경허가 및 신고수리포함) 수리 나.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변경허가 다. 배출시설 등의 가동시작 신고 라. 수질오염물질의 회석처리에 대한 인정 마. 허가의 취소, 조업정지·폐쇄명령 바. 기타 수질오염원의 설치 신고의 수리 사. 기타 수질오염원의 개선명령, 조업정지, 폐쇄명령 아. 배출허용기준 초과한 사업자에 대한 개선명령 자. 조업정지, 허가의 취소, 위법시설의 폐쇄명령 차. 배출부과금 및 과징금의 부과·징수 카. 보고 및 검사 등, 오염도검사 의뢰 타. 청문의 실시 파. 과태료의 부과·징수 2. 시 관할사업장 이외의 환경범죄 단속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과징금의 부과·징수 나. 불법배출시설물의 사용중지·철거·폐쇄명령·철거의 대집행, 표지판의 설치 다. 사업장의 출입·검사 라. 자료의 제출 3.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징수	물환경보전법 제33조 같은법 제34조 같은법 제37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8조 같은법 제42조, 제35조 제3항 같은법 제60조 제1항 같은법 제60조 제5항 내지 제6항 같은법 제39조 같은법 제40조, 제42조, 제44조 같은법 제41조, 제43조 같은법 제68조 같은법 제72조 같은법 제82조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2조 같은법 제13조 같은법 제16조 같은법 제17조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	

소관부서	위 입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수입기관
기 후 환경 정 책 과	4. 환경책임보험 적용대상 시설의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단, 국가 및 지방산업단지 안의 사업장과 1-3종 사업장은 제외) 가. 보고명령, 출입, 검사, 질문 나. 영업정지 명령 다. 과태료의 부과·징수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39조제2항 같은법 제43조제1항 같은법 제49조	구청장
대기보전과	1.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정기검사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정기검사 유효기간 연장 또는 유예 나.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수검명령 다. 이륜자동차 정기검사의 신청기간 경과의 통지 라.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정기검사 지정 정비사업자 지정 마.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지정정비사업자에 대한 업무정지 명령 및 지정 취소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 제3항 같은법 제62조 제4항 시행규칙 제86조의 6 같은법 제62조의3 같은법 제62조의4	
자원순환과	1.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단, 국가 및 지방산업단지 안의 사업장과 대기 또는 수질분야의 특정 유해물질 배출사업장은 제외) 가. 개선명령, 사용중지명령 및 폐쇄명령 나. 과징금의 부과·징수 다. 주변지역 영향조사 결과의 접수 라.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측정 또는 영향조사 명령 마. 보고명령, 자료제출명령 및 검사 바. 위입된 권한에 관한 청문사, 과태료의 부과·징수 2.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보관시설과 재활용시설의 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 나. 잔류성유기오염물질합유폐기물 재활용 시설에 대한 사용중지 또는 폐쇄 명령 다. 관리대상기기 등의 신고 또는 변경 신고의 수리 라. 조치명령 마. 보고명령, 자료제출명령 및 검사 바. 위입된 권한에 관한 청문사, 과태료의 부과·징수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 제16조 같은법 제17조 같은법 제19조 같은법 제19조 같은법 제29조 같은법 제30조 같은법 제37조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 제23조 같은법 제16조 같은법 제24조 같은법 제25조 같은법 제29조 같은법 제30조 같은법 제37조	

소관부서	위 입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수입기관
자원순환과	3. 포장폐기물의 발생억제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과태료의 부과·징수 나. 비용기보증금 미지급 소매업자 신고 보상금의 지급 4. 폐기물관리법 제6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제2호로 시장이 위입받은 지정폐기물 또는 의료폐기물 및 이를 수집 운반하는 자에 대한 다음의 권한 가. 폐기물처리계획서·폐기물분석결과서·수탁확인서의 확인·변경확인, 폐기물인계서의 접수 나. 보고서의 제출명령 다. 보고명령 및 검사 라. 폐기물처리에 따른 조치명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2조 같은법 제15조의 4 폐기물관리법 제17조 같은법 제38조 같은법 제39조 같은법 제48조 같은법 제49조 같은법 제48조의5	구청장

마. 대집행 및 비용징수 바.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같은법 제29조제2항, 제3항 같은법 제32조제3항 같은법 제33조 같은법 제31조 같은법 제50조 내지 52조
5.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설치승인·변경승인 및 설치신고·변경신고 나. 관계행정기관과의 협의 다. 권리의무승계의 신고수리	
6. 폐기물처리업자가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개선명령·사용중지명령·폐쇄명령 등 폐기물 처리시설의 관리 나. 폐기물 처리시설의 사후관리 등 사무(사용종료·폐쇄신고수리, 시정명령, 대행자지정, 사후관리이행 보증금 등의 징수·예치·사전적립 등) 다. 과태료의 부과징수 라. 사용종료 또는 폐쇄 후의 토지 이용 제한	같은법 제68조 같은법 제54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8조제4항 같은법 제39조
7.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사용계획서 접수 및 접수 내용 통보 나. 사용 권고 또는 시정조치명령	

소관부서	위 입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수입기관
공원녹지과	1. 산림관리기반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 2. <삭제> 3. 조림비 및 산림관리기반시설비의 반환 조치 4. 임업후계자 또는 독립가의 선발·선정·지원·취소 5. 사망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사망지의 지정·협의 및 고시 나. 사망사업의 시행<신설> 다. 삭제 라. 사망지의 지정해제 및 해제고시 6.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에 설치된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 가. 철거 명령 나. 자료 제출 명령 및 현장조사 실시 다. 사용중지·개선 또는 철거의 명령 라. 자료 제출 및 보고의 명령 마. 검사 및 질문 바. 검사 또는 질문의 일시·이유 및 내용 등을 포함한 계획의 통지 사. 과태료의 부과·징수 아. 제출 기한의 연장 자. 조사계획의 통지 차. 자료 제출 또는 보고 기한의 연장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5조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 사망사업법 제4조 같은법 제5조, 제7조의 2 같은법 제20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6조제3항 같은법 제22조제2항 같은법 제22조제3항 같은법 제23조제1항 같은법 제23조제2항 같은법 제23조제3항 같은법 제31조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14조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14조제3항 같은법시행령 제15조제2항	구청장

물 순환과	1. 하천·구거·유지·제방 및 그 부속시설 (국유재산법 외의 다른 법률에 의한 관리청으로서 관리하는 재산은 제외) 국토교통부 소관의 국유재산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처리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 제25조 국유재산법 제12조	
--------------	---	-----------------------------------	--

소관부서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수입기관
-------------	------------------	----------------	-------------

물 순환과	<p>나. 기부채납</p> <p>다. 등기·등록 기타 권리보존에 필요한 조치</p> <p>라. 관리청 지정을 위한 업무협의 및 소관여부 조회</p> <p>마. 행정재산의 관리위탁</p> <p>바. 관리전환의 협의</p> <p>사. 국유재산의 사용승인</p> <p>아.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및 갱신허가</p> <p>자. 행정재산의 용도폐지</p> <p>차. 일반재산의 관리·처분</p> <p>카. 일반재산의 대부 및 갱신</p> <p>타. 국유재산의 멸실 등의 보고</p> <p>파. 공공시설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무상양도·무상귀속 협의</p> <p>2. 국가하천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p> <p>가. 하천의 점용 등 허가로 인하여 발생된 권리·의무의 양도·양수 및 상속 등의 신고수리(시장 허가 사항에 한함)</p> <p>나. 토지 점용허가 및 이의 고시</p> <p>다. 토석·모래·자갈,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하천 산출물의 채취허가 및 이의 고시</p> <p>라. 스케이트장, 유선장의 설치허가 및 이의 고시</p> <p>마. 대통령령이 정하는 식물의 재식 허가 및 이의 고시</p> <p>바. 선박의 운항허가 및 이의 고시</p> <p>사. 하천점용 등에 관한 공사의 대행 및 기간의 통지</p> <p>아. 타인토지에의 출입 및 그 사용 등을 위한 처분(시장이 허가한 사항에 한함)</p> <p>자. 원상회복명령 또는 원상회복 의무의 면제 및 부속공작물의 국유화 조치(시장이 허가한 사항에 한함)</p> <p>차. 죽목의 재식과 공작물의 신·개축 허가</p> <p>카. 토지의 굴착·성토·절토, 기타 토지형상변경허가</p> <p>타. 법령위반자에 대한 처분(시장에게 허가권이 있는 경우에 한함)</p> <p>파. 공익을 위한 처분 또는 조치의 명령(시장에게 허가권이 있는 경우에 한함)</p> <p>하. 보고의 수리 및 출입·검사</p>	<p>같은법 제13조</p> <p>같은법 제14조</p> <p>같은법 제24조</p> <p>같은법 제29조</p> <p>같은법 제16조</p> <p>같은법 제17조</p> <p>같은법 제30조 및 제35조</p> <p>같은법 제40조</p> <p>같은법 제41조 및 제42조</p> <p>같은법 제46조 및 제47조</p> <p>같은법 제70조</p> <p>국유재산법외의 다른 법률</p> <p>하천법 제5조</p> <p>같은법 제33조</p> <p>같은법 제33조</p> <p>같은법 제33조</p> <p>같은법 제36조</p> <p>같은법 제75조</p> <p>같은법 제48조</p> <p>같은법 제38조</p> <p>같은법 제38조</p> <p>같은법 제69조</p> <p>같은법 제70조</p> <p>같은법 제90조</p>	구청장
--------------	---	--	-----

소관부서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수입기관
-------------	------------------	----------------	-------------

하수관리과	1. 공공하수도시설의 개선·기타 필요한 조치명령	하수도법 제25조제2항	구청장
--------------	----------------------------	--------------	-----

주택정책과	<p>1.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주택단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p> <p>가. 철거 명령</p> <p>나. 자료 제출 명령 및 현장조사 실시</p> <p>다. 사용중지·개선 또는 철거의 명령</p>	<p>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p> <p>같은법 제16조제3항</p> <p>같은법 제22조제2항</p> <p>같은법 제22조제3항</p>	
--------------	---	---	--

	<p>라. 자료 제출 및 보고의 명령</p> <p>마. 검사 및 질문</p> <p>바. 검사 또는 질문의 일시·이유 및 내용 등을 포함한 계획의 통지</p> <p>사. 과태료의 부과·징수</p> <p>아. 제출 기한의 연장</p> <p>자. 조사계획의 통지</p> <p>차. 자료 제출 또는 보고 기한의 연장</p>	<p>같은법 제23조제1항</p> <p>같은법 제23조제2항</p> <p>같은법 제23조제3항</p> <p>같은법 제31조제1항</p> <p>같은법시행령 제14조제2항</p> <p>같은법시행령 제14조제3항</p> <p>같은법시행령 제15조제2항</p>	
--	--	---	--

교통정책과	<p>1. 국제물류주선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p> <p>가. 사업의 양도·양수 또는 법인합병 및 상속신고의 수리</p> <p>나. 사업의 휴지·폐지신고의 수리</p> <p>2.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관한 다음 사무</p> <p>가.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p> <p>나.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사항 변경허가</p> <p>다. 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운송사업 및 운송주선사업)</p> <p>라. 책임보험계약등의 미체결 보충등의 의무가입자에 대한 통지(운송사업 및 운송주선사업)</p> <p>마. 운송가맹점 가입사업자의 운송가맹사업자의 운송가맹점으로서의 상호변경신고(운송사업 및 운송주선사업)</p> <p>바. 개선명령(운송사업 및 운송주선사업)</p> <p>사. 사업의 양도·양수 또는 합병의 신고(운송사업 및 운송주선사업)</p> <p>아. 사업의 상속신고(운송사업 및 운송주선사업)</p> <p>자.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취소·사업정지 처분 및 감차조치 명령</p>	<p>물류정책기본법 제45조</p> <p>같은법 제46조</p> <p>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3조제1항</p> <p>같은법 제3조제3항</p> <p>같은법 제3조제7항, 제21조 제5항</p> <p>같은법 제8조의5제2항, 제24조</p> <p>같은법 제10조제9항, 제24조</p> <p>같은법 제12조, 제24조</p> <p>같은법 제14조, 제24조</p> <p>같은법 제15조, 제24조</p> <p>같은법 제17조제1항</p> <p>같은법 제18조</p>	
--------------	---	---	--

소관부서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수입기관
-------------	------------------	----------------	-------------

교통정책과	<p>차. 화물자동차의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등록 번호판의 반납 및 반환</p> <p>카. 과징금 부과·징수 및 과징금운용계획의 수립·시행(운송사업 및 운송주선사업)</p> <p>타. 청문(운송사업 및 운송주선사업)</p> <p>파. 화물운송종사자자격의 취소 및 효력의 정지</p> <p>하. 화물운송종사자자격자에 대한 청문</p> <p>거.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의 허가</p> <p>너.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의 허가취소 및 사업정지 처분</p> <p>더. 사업자로부터의 업무·재산 등에 관한 보고·경영실태조사 및 재무관리상태 진단(운송사업 및 운송주선사업)</p> <p>러.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운송사업 및 운송주선사업)</p> <p>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주선사업) 휴·폐업신고</p>	<p>같은법 제19조, 제24조</p> <p>같은법 제20조, 제24조</p> <p>같은법 제20조의2제1항</p> <p>같은법 제20조의2제3항</p> <p>같은법 제21조제1항</p> <p>같은법 제23조의2</p> <p>같은법 제32조</p> <p>같은법 제50조</p> <p>같은법 제18조, 제28조</p> <p>동법규칙 제26조, 제40조</p>	구청장
--------------	---	---	-----

대중교통과	<p>1. 시내버스운송사업에 대한 다음의 권한</p> <p>가. 운송시설확인, 운송개시기일연기·개시기연장 신청의 수리</p> <p>나. 운송사업에 대한 보고·검사 등</p> <p>다. <삭제></p> <p>라. 과태료의 부과·징수</p> <p>마. 시내버스 정류소 조정 및 조사·확인</p> <p>2. 택시운송사업에 대한 다음의 권한</p>	<p>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조</p> <p><삭제></p> <p>같은법 제94조</p> <p>같은법 제75조제2항</p> <p>같은법 제10조</p> <p>같은법 제14조</p>	
--------------	--	--	--

가. 사업계획의 변경	같은법시행규칙 제21조
나.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	같은법 제15조
가	같은법 제16조
다. 개인택시 대리운전신고의 수리	같은법 제7조
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상속신고수리	같은법 제79조
마. 개인택시운송사업의 휴지·폐지 허가	같은법 제84조
바. 운송시설확인, 운송개시기일연기·개시기간연장신청의 수리	같은법 제88조, 제88조, 제94조
사. 운송사업자 등에 대한 보고·검사 등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2항, 제18조 및 제23조3항
아. 차량연장신고의 수리	
자. 법규위반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에 대한 행정처분 (단, 면허·등록·허가취소·감차 등을 수반하는 처분은 제외한다)	

소관부서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수입기관
건설행정과	1. 건설기계 검사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	구청장
	2.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자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건설업 등록신청의 접수·내용확인·수리 및 건설업등록 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의 접수·내용확인·수리 나. 기재사항 변경신청의 접수·내용확인·수리 다. 건설업의 양도·병인합병 및 상속에 대한 신고의 접수·내용확인·수리 라. 건설업등록증 및 건설업등록수첩의 교부·재교부 마. 표시제한을 위반한 자에 대한 광고물의 강제철거 등의 조치 바. 건설업 폐업신고의 수리 및 건설업 등록 말소 사. 시정명령·지시 아.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의 부과 자. 건설업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차. 건설업 등록말소 등의 공고 및 통지 카. 청문 타. 과태료의 부과·징수 파. 건설업등록 등 건설행정에 관한 사항의 건설산업종합정보망에 입력 및 공고 하. 건설업 등록대장의 작성·보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같은법 제9조의 2 같은법 제17조 같은법 제9조의 2 같은법 제11조 같은법 제20조의 2 같은법 제81조 같은법 제82조 같은법 제83조 같은법 제85조의 3 같은법 제86조 같은법 제101조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제11조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 1	
도로과	1. 도로 및 그 부속시설 (국유재산법 외의 도로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한 관리청으로서 관리하는 재산은 제외) 국토해양부 소관의 국유재산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처리 나. 기부채납 다. 등기·등록 기타 권리보존에 필요한 조치 라. 관리청 지정에 관한 업무협의 및 소관여부 조회 마.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바. 관리전환의 협의 사. 국유재산의 사용승인 아.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및 갱신허가 자.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차. 일반재산의 관리·처분	국유재산법 제25조 국유재산법 제12조 같은법 제13조 같은법 제14조 같은법 제24조 같은법 제29조 같은법 제16조 같은법 제17조 같은법 제30조 및 제35조 같은법 제40조 같은법 제41조 및 제42조	

소관부서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수입기관
도로과	가. 일반재산의 대부 및 갱신 타. 국유재산의 멸실 등의 보고 파. 공공시설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무상양도·무상귀속 협의 2. 도로법 시행령 제1조의3제5호에 따른 휴게시설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 가. 철거 명령 나. 자료 제출 명령 및 현장조사 실시 다. 사용중지·개선 또는 철거의 명령 라. 자료 제출 및 보고의 명령 마. 검사 및 질문 바. 검사 또는 질문의 일시·이유 및 내용 등을 포함한 계획의 통지 사. 과태료의 부과·징수 아. 제출 기한의 연장 자. 조사계획의 통지 차. 자료 제출 또는 보고 기한의 연장	같은법 제46조 및 제47조 같은법 제70조 국유재산법외의 다른 법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같은법 제16조제3항 같은법 제22조제2항 같은법 제22조제3항 같은법 제23조제1항 같은법 제23조제2항 같은법 제23조제3항 같은법 제31조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14조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14조제3항 같은법시행령 제15조제2항	구청장
문화기반조성과	1. 전통사찰의 등록 및 변경등록 2. 전통사찰에 관한 다음 각호사항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 다만, 가호의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소속 대표단체 대표자의 승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 같은법 제9조제2항	
문화산업과	1. 도서정가표시·판매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2. 법 제26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권한 가. 법 제28조제1항 제5호에 따른 과태료 나. 법 제28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과태료 중 법 제23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자에 대한 과태료 다. 법 제28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과태료 중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유통과 관련된 시·도지사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출판및인쇄진흥법 제28조 출판산업진흥법 제26조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소관부서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수입기관
민생경제과	1. 가격표시 의무자 지정 2. 물가안정에 관한 사업자의 원가 및 경영상황에 관한 보고·자료의 제출명령 및 사업소·사업장에서 장부·서류·기타 물건의 검사 3. 과태료의 부과·징수 4. 국내유통중인 수입물품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원산지표시 검사 나. 원산지표시 위반자의 과태료부과·징수 및 이의제기의 수리 5.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	물가안정에관한법률 제3조 같은법 제16조제1항 같은법 제26조 대외무역법 제23조제4항 같은법 제60조제2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6조 제3항 같은법 제22조제2항	구청장

가. 철거 명령	같은법 제22조제3항
나. 자료 제출 명령 및 현장조사 실시	같은법 제23조제1항
다. 사용금지·개선 또는 철거의 명령	같은법 제23조제2항
라. 자료 제출 및 보고의 명령	같은법 제23조제3항
마. 검사 및 질문	
바. 검사 또는 질문의 일시·이유 및 내용 등을 포함한 계획의 통지	같은법 제31조제1항
사. 과태료의 부과·징수	같은법시행령 제14조제2항
아. 제출 기한의 연장	같은법시행령 제14조제3항
자. 조사계획의 통지	같은법시행령 제15조제2항
차. 자료 제출 또는 보고 기한의 연장	
6. 안전검사대상 공산품의 개선·파기·수거명령 등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제31조
7. 부정행위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가. 부정경쟁행위 등의 조사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나. 위반행위의 시정권고	같은법 제8조
다. 의견청취	같은법 제9조
라. 과태료의 부과·징수	같은법 제20조
8. <삭제>	<삭제>

소관부서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별 령	수입기관
생명농업과	1. 농림수산물부 소관 농업기반시설용 국유재산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재산의 관리 나.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취득 다. 등기·등록 및 기타 필요한 조치 라. 행정재산등의 관리소홀에 대한 제재 조치 마. 일반재산에 대한 관리·처분 바. 국유재산대장·등기부등본·도면의 비치, 실태조사 및 대장정비, 서류의 열람·복사·등초본의 교부청구 사. 변상금의 징수 아. 과·오납금 등의 반환 자. 국유재산 내 불법시설물의 철거 및 기타 필요한 조치 2. 구청장이 관리하는 국유 농업기반시설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사용·수익의 허가 나. 사용료의 징수 다. 사용료의 면제 라. 사용·수익허가기간의 갱신 마. 사용·수익허가의 취소 및 철회 3. 종전의 농경지조정법에 의한 다음의 권한 가. 타인소유지의 개간 후 분배 나. 허가의 양도 다. 개간준공허가 라. 허가의 취소 4. 불법농지 등의 조사·전용협의 및 허가 농지의 사후 관리 5. 개발농지의 변경승인 6. 농업기반정비사업시행의 고시·통지·변경 및 폐지승인 7. 10만㎡ 미만의 소규모 개간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예정지조사 실시 나. 기본조사 실시 및 기본계획 실시 다. 세부설계 실시 및 시행계획 수립 라. 사업시행의 인가·고시·통지·변경 및 폐지승인 마. 재산의 관리 및 처분승인	국유재산법 제8조 같은법 제12조 같은법 제14조 같은법 제39조 같은법 제41조 같은법 제66조 같은법 제72조 같은법 제75조 같은법 제74조 국유재산법 제30조 같은법 제32조 같은법 제34조 같은법 제35조 같은법 제36조 행정권한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29조제1항제2호 농지법 제39조 농지법 제40조 농어촌정비법 제9조 농어촌정비법 제7조 같은법 제8조 같은법 제9조 같은법 제9조 같은법 제14조 양곡관리법 제8조	구청장

소관부서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별 령	수입기관
에너지산업과	1. 전기용품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안전 인증대상 전기용품의 개선·파기·수거명령 등 나. 안전 인증대상 전기용품의 보고 및 검사 등 2. 일반용 전기설비의 사용금지 또는 사용제한 3. 채광사업의 재개신고의 수리 4. 조광권자의 사업휴지인가 및 재개 신고의 수리 5. 에너지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조정·명령 등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 6. 발전사업 용량이 3,000KW이하 발전사업에 대한 다음의 권한 가. 법 제7조 1항에 따른 전기사업의 허가 나. 법 제9조에 따른 준비기간의 지정·연장 및 사업개시 신고의 접수 다. 법10조에 따른 전기사업의 양수, 전기사업자인 법인의 분할·합병의 인가 및 공고 등 라. 법 제 12조에 따른 사업허가의 취소 및 사업의 정지, 사업구역의 감소, 과징금의 부과·징수 등 마. 법 제13조에 따른 청문 바. 법 제61조3항에 따른 공사계획의 신고 및 변경신고의 접수 사. 법 71조에 따른 기술기준에의 적합 명령 7. 계량기수리검정 및 유효기간 만료 전 검정 (전력량계, 오일미터·액화석유가스·가스미터 제외)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8조 같은법 제11조 전기안전관리법 제20조 광업법 제42조의2 광업법 제42조의2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7조, 제78조 전기사업법 시행령 62조 같은법시행령 제62조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62조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62조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62조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62조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62조제1항 계량에 관한법률 제24조 및 제25조	구청장

광주광역시 고시 제2021-352호

고룡비야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시행계획 변경 승인 고시

『농어촌정비법』 제9조 제8항의 규정에 따라 「고룡비야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시행계획을 변경승인하고, 같은 법 제9조 제9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 9. 27.

광 주 광 역 시 장

1. 사업의 명칭 : 고룡비야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2. 사업 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광주지사장
3. 사업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노후 수리시설물 개보수로 사전 재해예방 및 안전 영농기반 구축
나. 사업개요

공 종	고룡 저수지	복성 저수지	비아 저수지		진성 저수지	
	변경 없음	변경 없음	당초	변경	변경 없음	
계 방	고 르 기	L=96m, H=0.4m	L=80m, H=0.3m	-	-	L=157m, H=0.3m

	그라우팅	-	-	L=76m, 77공	L=76m, 227공	-
여수로	물넘이	L=12m, H=0.7m	L=4m, H=0.7m	-	-	-
	방수로	L=89m, B=7.0m	L=28m, B=2.0m	L=108m, B=4.0m	-	안전시설
취수시설	사통	D300mm, (2공)	D300mm, (1공)	D300mm, (1공)	D300mm, (1공)	D300mm, (1공)
	복통	D800mm, L=12.0m	D800mm, L=22.3m	D800mm, L=10.1m	D800mm, L=10.1m	D800mm, L=10.4m
준설	내제	V = 10,113 m ³	-	V = 27,370 m ³	V = 27,370 m ³	-

다. 공사기간 : 2019.12 ~ 2022.12 (변경) 2019. 12 ~ 2021. 12.

라. 사업비 : 3,152백만원 (변경없음)

2021. 10. 19.

4. 관계도서 비치 : 관계도서는 한국농어촌공사 광주지사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062-380-8647)

광주광역시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세목조서 및 지장물 조서 : “붙임”

□ 토지세목조서 (변경)

<당 초>

□ 지구별 수용 사용할 토지 등의 조서

지구명	시·군	읍·면	리·동	지번	지목	총면적 (㎡)	편입예정면적 (㎡)	토지소유자 주소	소유자	비고
계				6필지		48,349	1,399			
고룡비아	광주광역시	광산구	고룡동	443	유	27,769	168	국농림축산식품부		
고룡비아	광주광역시	광산구	고룡동	895-4	구	8,294	833	국농림축산식품부		
고룡비아	광주광역시	광산구	고룡동	895-2	도	3,877	12	국농림축산식품부		
고룡비아	광주광역시	광산구	복산동	575-2	전	5,109	300	광주광역시 광산구 도덕동 705-16	방우길	
고룡비아	광주광역시	광산구	복산동	54-2	임	796	76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곡산정로 80, 6동 306호(월곡동, 하남금호아파트)	최순진	
고룡비아	광주광역시	광산구	복산동	1060-14	천	2,504	10	국농림축산식품부		

<변경>

□ 지구별 수용 사용할 토지 등의 조서

● 변경사유 : 지적측량 실시결과에 따른 지적면적 상이로 인한 직권면적조정에 의한 함

지구명	시·군	읍·면	리·동	지번	지목	총면적 (㎡)	편입예정면적 (㎡)	토지소유자 주소	소유자	비고
합계				6필지		48,354	1,373			
고룡비아	광주광역시	광산구	고룡동	443	유	27,769	168	국농림축산식품부		
고룡비아	광주광역시	광산구	고룡동	895-4	구	8,294	833	국농림축산식품부		
고룡비아	광주광역시	광산구	고룡동	895-2	도	3,877	12	국농림축산식품부		
고룡비아	광주광역시	광산구	복산동	575-2	전	4,809	-	광주광역시 광산구 도덕동 705-16	방우길	
고룡비아	광주광역시	광산구	복산동	575-3	전	300	300	광주광역시 광산구 도덕동 705-16	방우길	
고룡비아	광주광역시	광산구	복산동	54-2	임	751	-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곡산정로 80, 6동 306호(월곡동, 하남금호아파트)	최순진	변경(직권면적조정)
고룡비아	광주광역시	광산구	복산동	575-4	임	50	50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곡산정로 80, 6동 306호(월곡동, 하남금호아파트)	최순진	
고룡비아	광주광역시	광산구	복산동	1060-1	천	2,504	10	국농림축산식품부		

광주광역시 고시 제2021-376호

광주도시계획시설(공원: 본촌근린공원) 변경결정·지형도면·실시계획변경 고시

1. 광주도시계획시설(공원: 본촌근린공원)사업 변경시행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과 같은 법 제88조,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와 제100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광주광역시(도시계획과, 공원녹지과)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가.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조서

1) 공원(근린공원)

도면 표시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증·감		
17	본촌공원	근린공원	북구 양산동 288-3 일원	71,541	71,555	증) 14	건고144 (' 67.2.20.)	

2) 변경 사유 : 구역경계 변경없는 토지 분할측량 결과 면적변경 반영

나.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지형도면 고시 : 변경 없음(열람장소 비치)

□ 실시계획 변경

가. 사업시행지(변경 없음)

1)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동 288-3번지 일원

나. 사업종류 및 명칭(변경 없음)

1) 종 류 : 광주도시계획시설(공원: 본촌근린공원)사업

2) 명 칭 : 본촌근린공원 조성사업

다. 사업규모(변경)

(단위:㎡)

시설명	총 규모		금회 시행		비고
	당 초	변 경	당 초	변 경	
본촌근린공원	71,541	71,555	10,575	10,589	증) 14

라. 변경사유 : 구역경계 변경없는 토지 분할측량 결과 편입면적 변경 및 소재지 (지번) 오기 정정

마.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변경 없음)

1) 주 소 : 광주 서구 내방로 111(치평동)

2) 성 명 : 광주광역시장

바. 사업시행기간 : 2020. 2. 19. ~ 2023. 12. 31.(변경 없음)

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변경) : 붙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조서(본촌근린공원)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이해관계인	비고
		당초	변경		변경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공부	편입						
계		29필지			13,519	10,575	62,632	10,589				
1	북구 양산동	119-7	산119-7	임	760	414	414	414	홍주송씨 통덕랑***	광주광역시		오기 정정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공부	편입	공부	편입					
2	북구 연제동	16-2	산16-2	임	158	158	158	158	홍주송씨 성재공인*				오기 정정
3	북구 양산동	289-0	289-0	전	988	988	988	988	정정* 조광* 김희*				
4	북구 양산동	289-1	289-1	전	69	69	69	69	정정* 조광* 김희*				
5	북구 양산동	290-0	290-0	대	188	188	188	188	정정*				
6	북구 연제동	20-1	20-1	담	243	243	243	243	최영*				
7	북구 연제동	19-1	19-5	담	815	260	274	274	배정*				분할 측면 정정
8	북구 연제동	22-1	22-1	전	123	123	123	123	공				
9	북구 연제동	20-2	20-2	도	17	17	17	17	공				
10	북구 연제동	20-3	20-3	담	12	12	12	12	공				
11	북구 연제동	18-2	18-2	담	98	98	98	98	공				
12	북구 양산동	288-3	288-3	유	4,823	5,248	5,823	5,248	국				오기 정정
13	북구 양산동	288-3 1	288-31	유	70	70	70	70	국				
14	북구 양산동	668-0	668-0	담	897	897	897	897	공				
15	북구 양산동	668-1	668-1	도	328	16	328	16	공				
16	북구 양산동	668-4	668-4	담	9	9	9	9	공				
17	북구 양산동	668-5	668-5	담	148	148	148	148	공				
18	북구 양산동	669-2	669-2	구	259	259	259	259	국				
19	북구 양산동	669-2 2	669-22	구	99	99	99	99	국				
20	북구 양산동	669-2 3	669-23	구	1,581	4	1,581	4	국				
21	북구 양산동	685-4	685-4	도	160	160	160	160	국				
22	북구 양산동	685-1 3	685-13	도	114	69	114	69	국				
23	북구 양산동	685-1 5	685-15	도	19	19	19	19	국				
24	북구	685-1	685-16	도	158	158	158	158	국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공부	편입	공부	편입					
25	양산동 북구 연제동	6											
26	북구 연제동	21-4	21-4	담	330	330	330	330	공				교통 부 광주 광역시
27	북구 연제동	21-5	21-5	담	278	278	278	278	공				광주 광역시
28	북구 연제동	980-2	980-2	구	300	99	300	99	국				동림 축산 식품 부
29	북구 연제동	980-2 9	980-29	구	452	119	452	119	국				동림 축산 식품 부
29	북구 연제동	980-3 3	980-33	구	23	23	23	23	국				동림 축산 식품 부

광주광역시 고시 제2021-380호

도시관리계획(중흥근린공원)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관리계획(중흥근린공원) 결정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률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광주광역시 공원녹지과, 도시계획과, 북구 공원녹지과에 일반인 열람용으로 비치합니다.

2021. 10. 19.

광 주 광 역 시 장

I. 중흥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 개요

1. 공원구역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적(㎡)	비 고
신설	238	중흥3지구	근린공원	북구 중흥동 367-43번지 일원	6,877.1	

2. 공원지정현황

- 공원지정년월일 : 2019.11.15.(광고-제284호)
- 공원조성계획 결정 : **금회 최초**

3. 공원조성계획 결정 사유서

- 신청부서 : 북구 공원녹지과
- 신청내용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공원조성계획의 결정)에 따른 중흥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

4. 법적 검토사항

구 분	신 설	비 고
시설률 (법정 40%이하)	34.52%	
설치제한면적 (법정 20%이내)	16.09%	
건폐율 (법정 10%이하)	-	

II. 중흥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조서

1. 공원조성계획 결정조서 총괄표

구분	신 설					비 고
	부지면적 (㎡)	건 축 물			공작물 (기)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총 계	6,877.1	-	-	-	44	
시설소계	2,374.0	-	-	-	-	
기반 시설	소계	1,556.0	-	-	-	
	도로	1,117.0	-	-	-	
	광장	439.0	-	-	-	
조경시설	105.0	-	-	-	25	
휴양시설	150.0	-	-	-	5	
유희시설	181.0	-	-	-	8	
운동시설	382.0	-	-	-	5	
교양시설	-	-	-	-	-	
공원관리시설	-	-	-	-	1	
녹지 및 기타	4,503.1	-	-	-	-	
시설률 (법정 40%)	$(2,374.0 / 6,877.1) \times 100 = 34.52\%$ (공원면적의 40%이하)					(시행규칙 11조) [별표 4]
설치 제한 면적 (법정 20%)	$(382.0 / 2,374.0) \times 100 = 16.09\%$ (시설부지면적의 20% 이내)					(시행규칙 11조 5항) 도서관, 문화예술회관, 청소년수련시설, 노인복지관, 운동시설, 부지면적 합
건 폐 율 (법정 20%)	-					(조례 67조 5항) [별표 16의 2]

2. 세부시설 결정조서

구분	신 설					비 고			
	부호	시설명	위치	부지면적 (㎡)	건 축 물		공작물 (기)		
					동수			바닥면적 (㎡)	연면적 (㎡)
총계				6,877.1				44개소	
시설 소계				2,374.0				44개소	
기반 시설		소계		1,556.0	-	-	-	-	시설률 : 34.5%
		도로	전지역	1,117.0	-	-	-	-	
	1-1	진입광장1	공원내	35.0	-	-	-	-	
	1-2	진입광장2	공원내	83.0	-	-	-	-	
	1-3	진입광장3	공원내	130.0	-	-	-	-	
	1-4	가로광장1	공원내	120.0	-	-	-	-	
조경 시설		소계		105.0	-	-	-	-	25개소
	2-1	잔디광장	공원내	105.0	-	-	-	-	
	①	벤치	공원내	-	-	-	-	-	17개소
휴양 시설		소계		150.0	-	-	-	-	5개소
		휴게쉼터	6개소	150.0	-	-	-	-	
	3-1	휴게쉼터1	공원내	24.0	-	-	-	-	
	3-2	휴게쉼터2	공원내	94.0	-	-	-	-	
	3-3	소憩터1	공원내	8.0	-	-	-	-	
	3-4	소憩터2	공원내	8.0	-	-	-	-	
	3-5	소憩터3	공원내	8.0	-	-	-	-	
	3-6	소憩터4	공원내	8.0	-	-	-	-	
	③	정자	공원내	-	-	-	-	-	1개소
	④	파고라	공원내	-	-	-	-	-	1개소
⑤	평상	공원내	-	-	-	-	-	3개소	
유희 시설		소계		181.0	-	-	-	-	8개소
	4-1	어린이놀이터	공원내	181.0	-	-	-	-	
	⑥	네트놀이대	공원내	-	-	-	-	-	2개소
	⑦	흔들놀이대	공원내	-	-	-	-	-	4개소
	⑧	트리하우스	공원내	-	-	-	-	-	1개소
	⑨	외줄타기	공원내	-	-	-	-	-	1개소
운동 시설		소계		382.0	-	-	-	-	5개소
	5-1	다목적운동장	공원내	382.0	-	-	-	-	
	⑩	체력단련시설	공원내	-	-	-	-	-	5개소
관리 시설		소계		-	-	-	-	-	1개소
	⑪	안전웬스	공원내	-	-	-	-	-	530m
	⑫	음수대	공원내	-	-	-	-	-	1개소

구분	신 설							비 고	
	부호	시설명	위치	부지면적 (㎡)	건 축 물				공작물 (기)
					동수	바닥면적 (㎡)	연면적 (㎡)		
녹지 및 기타		소계		4,503.1	-	-	-	-	녹지율 : 65.5%
		녹지	전지역	4,503.1	-	-	-	-	

3. 도로결정(신설)조서

구분	등급	류	별	번호	폭 원 (m)	연 장 (m)	면 적 (㎡)	기 능	기 점	종 점	비 고	
신설	합		계			600.0	1,117.0					
	소로		계			342.0	773.0					
신설	산책로	3	1	2.5	17.0	51.0	25.0	연결로	공원부속 경계	소로3-2		
		3	2	2.0	45.0	81.0	15.0	연결로	공원부속 경계	소로3-5		
		3	3	2.0	130.0	267.0	19.0	연결로	공원부속 경계	산책로1-2		
		3	4	2.0	10.0	20.0	24.0	연결로	공원부속 경계	산책로1-8		
		3	5	2.0	14.0	30.0	20.0	연결로	공원부속 경계	산책로1-8		
		3	6	3.0	95.0	257.0	12.0	연결로	공원부속 경계	산책로1-8		
		3	7	2.0	31.0	67.0	26.0	연결로	공원부속 경계	산책로1-7		
		계					258.0	344.0				
		1	1	1.5	19.0	25.0	13.0	연결로	공원부속 경계	소로3-8		
		1	2	1.5	10.0	15.0	9.0	연결로	공원부속 경계	소로3-8		
		1	3	1.5	16.0	19.0	13.0	연결로	공원부속 경계	소로3-5		
		1	4	1.5	20.0	24.0	11.0	연결로	공원부속 경계	소로3-8		
		1	5	1.5	17.0	20.0	13.0	연결로	공원부속 경계	소로3-5		
		1	6	1.5	13.0	16.0	9.0	연결로	공원부속 경계	소로3-8		
1	7	1.5	10.0	12.0	13.0	연결로	공원부속 경계	소로3-8				
1	8	1.5	22.0	26.0	15.0	연결로	공원부속 경계	소로3-8				
1	9	1.5	10.0	13.0	15.0	연결로	공원부속 경계	소로3-5				
1	10	1.5	11.0	14.0	15.0	연결로	공원부속 경계	소로3-8				
1	11	1.5	13.0	16.0	13.0	연결로	공원부속 경계	소로3-5				
1	12	1.5	9.0	12.0	15.0	연결로	공원부속 경계	소로3-8				
1	13	1.5	41.0	61.0	41.0	연결로	가로광장1	휴게쉼터1				
1	14	1.5	47.0	71.0	47.0	연결로	가로광장2	소로3-6				

광주광역시 고시 제2021-383호

도시관리계획(본촌근린공원 조성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관리계획(본촌근린공원 조성계획) 변경결정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률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광주광역시 공원녹지과, 도시계획과, 북구 공원녹지과에 일반인 열람용으로 비치합니다.

2021. 10. 21.

광 주 광 역 시 장

1. 도시계획시설(본촌근린공원) 조성계획(변경) 결정조서

1. 공원구역 결정조서 (변경)

구분	도면 표시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적(㎡)			비 고
					기정	증감	변경	
변경	17	본촌공원	근린공원	북구 양산동 288-3 일원	71,541.00	증14	71,555.00	

2. 공원지정현황

- 공원지정년월일 : 1967. 02.
- 20.(건고-제144호)
- 공원조성계획 결정(최초) : 2004. 01.
- 16.(광고-제5호)

○ 공원조성계획 변경(최종) : 2020. 12.

29.(광고-제555호)

○ 도시계획시설 변경 : 2021. 10.

19.(광고-제376호)

3. 공원조성계획 변경 사유서

○ 신청부서 : 광주광역시 공원녹지과

○ 신청내용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공원조성계획의 결정)에 따른 본촌근린공원 공원조성계획 변경

○ 변경 사유

-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 반영(구역경계 변경없는 편입면적 조정)

4. 법적 검토사항

구분	기정	변경	비고
시설률(법정 40%이하)	22.37%	22.36%	감0.01%
건폐율(법정 10%이하)	2.90%	2.90%	-
설치제한시설율(20%이하)	5.38%	5.38%	-

II. 도시계획시설(본촌근린공원) 조성계획(변경) 결정조서

1. 공원조성계획(변경) 결정조서 총괄표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
	부지면적 (㎡)	건축물 바닥면적 (㎡)	연면적 (㎡)	공작물 (기)	부지면적 (㎡)	건축물 바닥면적 (㎡)	연면적 (㎡)	공작물 (기)	
총계	71,541.00	2,075.65	3,039.77	19	71,555.00	2,075.65	3,039.77	19	증14㎡
시설소계	16,005.18	2,075.65	3,039.77	19	16,005.18	2,075.65	3,039.77	19	-
기 반 사 설	소계	8,263.86	-	-	8,263.86	-	-	-	-
	도로	6,758.48	-	-	6,758.48	-	-	-	-
	광장	1,505.38	-	-	1,505.38	-	-	-	-
조경시설	1,001.68	-	-	1,001.68	-	-	-	-	-
휴양시설	320.34	-	-	320.34	-	-	-	4	-
유희시설	-	-	-	-	-	-	-	-	-
운동시설	862.13	-	-	862.13	-	-	-	15	-
교양시설	2,080.44	2,011.65	2,975.77	-	2,080.44	2,011.65	2,975.77	-	-
편의시설	3,476.73	64.00	64.00	-	3,476.73	64.00	64.00	-	-
공원관리사 실	-	-	-	-	-	-	-	-	-
녹지 및 기타	55,535.82	-	-	-	55,549.82	-	-	-	증14㎡
시설률 (법정 40%)	(16,005.18/71,555.00)×100=22.37% (공원면적의 40%이하)				(2,407.97/28,572)×100=22.36% (공원면적의 40%이하)				(시행규칙 11조) [별표4]
건폐율 (법정 10%)	(2,075.65/71,555.00) × 100 = 2.90% (공원면적의 15% 이내)				(2,075.65/71,555.00) × 100 = 2.90% (공원면적의 15% 이내)				(조례67조 5항) [별표 16의 2]
설치제한 시설율 (법정 20%)	(862.13/16,005.18)×100=5.38% (시설면적 20% 이하)				(862.13/16,005.18)×100=5.38% (시설면적 20% 이하)				(시행규칙 11조 5항) 도서관, 문화예술회관, 청소년수련시설, 노인복지관, 운동시설 부지면적 합

2.세부시설결정조서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시설명	위치	부지면적 (㎡) 동수	건축물 바닥면적 (㎡) 연면적 (㎡)	공작물 (기)	부호	시설명		위치	부지면적 (㎡) 동수	건축물 바닥면적 (㎡) 연면적 (㎡)	공작물 (기)	
총계				71,541.00	2,075.65	3,039.77	19			71,555.00	2,075.65	3,039.77	19	증 14㎡
시설소계				16,005.18	2,075.65	3,039.77				16,005.18	2,075.65	3,039.77		
기 반 사 설	소계			8,263.86				소계		8,263.86				
	도로	현지역		6,758.48				도로	현지역	6,758.48				
	1-1	광장1	양산동 288-1	449.57				1-1	광장1	양산동 288-1	449.57			
	1-2	광장2	양산동 688	708.65				1-2	광장2	양산동 688	708.65			
	1-3	광장3	양산동 685	352.16				1-3	광장3	양산동 685	352.16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시설명	위치	부지면적 (㎡) 동수	건축물 바닥면적 (㎡) 연면적 (㎡)	공작물 (기)	부호	시설명	위치	부지면적 (㎡) 동수		건축물 바닥면적 (㎡) 연면적 (㎡)	공작물 (기)	
조경시설	소계			1,001.68			소계			1,001.68				
	2-1	테크관찰로	양산동 288-3	1,001.68			2-1	테크관찰로		1,001.68				
휴양시설	소계			320.34		4	소계			320.34		4		
	3-1	쉼터1	양산동 내	50.27			3-1	쉼터1	양산동 내	50.27				
	3-2	쉼터2	양산동 내	50.05		4	3-2	쉼터2	양산동 내	50.05		4	편의점과 1기 동리정기	
운동시설	소계			862.13		15	소계			862.13		15		
	5-1	체력단련장 1	양산동 288-3	590.98			10	5-1	체력단련장 1	양산동 288-3	590.98		10	사각외곽 1개소 체력단련장 시설 추가
	5-2	체력단련장 2	양산동 288-3	271.15			5	5-2	체력단련장 2	양산동 288-3	271.15		5	체력단련장 시설 5기
교양시설	소계			2,080.44	2,011.65	2,975.77	소계			2,080.44	2,011.65	2,975.77		
	4-1	복합문화복지커뮤니티센터	양산동 345-5	1,937.39	1,937.39	2,901.51	4-1	복합문화복지커뮤니티센터	양산동 345-5	1,937.39	1,937.39	2,901.51		지하층 314.49 지상층 843.25 지상층 907.02 지상층 836.15
편의시설	소계			3,476.73	64.00	64.00	소계			3,476.73	64.00	64.00		
	6-1	주차장 1	양산동 289	1,383.96			6-1	주차장1	양산동 289	1,383.96				소형5면 대형면
녹지 및 기타	소계			55,535.82			소계			55,549.82			증 14㎡	
	녹지	현지역		55,535.82			녹지	현지역		55,549.82			양산동 25,226.42	

3. 도로결정조서

등급	변경구분	구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능	기점	종점	비고
합계	기정	총계			2,147.04	6,758.48	-			
소로	기정	소계			480.73	724.82	-			
	기정	3	1	3.21	297.70	954.32		광장1	대상지경계	
	기정	3	2	4.00	491.28	1,965.10		대상지경계	소로15	
	기정	3	3	3.00	336.09	1,008.27		체력단련장1	소로23	
	기정	3	4	3.00	279.95	839.85		소로23	체력단련장 2	
	기정	3	5	3.00	40.81	122.42		소로4	광장1	
	기정	3	6	2.00	25.16	50.31		소로4	화장실	
	기정	3	7	2.00	22.99	45.98		소로4	소로2	
	기정	3	8	2.00	21.79	43.57		소로4	소로2	
	기정	3	9	2.00	5.69	11.38		소로4	테크관찰로	
	기정	3	10	2.00	23.20	46.40		체력단련장1	소로2	
	기정	3	11	3.00	4.29	12.86		소로14	테크관찰로	
	기정	3	12	3.00	2.23	6.69		소로14	쉼터2	
	기정	3	13	3.00	47.76	143.27		소로14	소로2	
	기정	3	14	6.00	6.58	39.45		체력단련장1	체력단련장2	
	기정	3	15	6.00	26.76	160.55		소로14	양산제	
	기정	3	16	4.00	130.08	520.30		주차장3	소로1	
	기정	3	17	2.00	57.05	114.09		주차장3	소로1	
	기정	3	18	2.00	21.00	42.00		소로16	소로17	
	기정	3	19	2.00	26.32	52.64		소로17	대상지경계	
	기정	3	20	2.00	101.58	203.16		소로18	소로16	
	기정	3	21	2.00	15.44	30.87		소로3	소로16	
	기정	3	22	3.00	18.42	55.26		테크관찰로	소로1	
	기정	3	23	2.00	11.33	22.66		쉼터1	테크관찰로	
기정	3	24	2.00	22.01	44.02		쉼터1	테크관찰로		

기정	3	25	2.00	32.86	65.72		소로2	대상지경계	
기정	3	26	2.00	45.60	91.20		소로5	소로4	
기정	3	27	2.00	33.07	66.14		소로5	소로6	

광주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1-137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고시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 1224-22번지 일원의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주택법」 제 15조에 따라 승인하였기에 같은 법 제15조 제6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 10. 21.

광주광역시 북구청장

1. 사업명 : 용봉동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
2. 사업시행자
 - 가. 사업주체
 - (주)한국건설 (대표 조정숙) [광주광역시 북구 군왕로 191, 201호]
 - 나. 시공사
 - (주)백인종합건설(대표 양요식) [광주광역시 북구 군왕로 191, 201호]
3. 사업개요
 - 가. 대지위치 :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 1224-22번지
 - 나. 대지면적 : 900.9㎡
 - 다. 주택건설사업규모(건축연면적) : 1,961.378㎡
 - 라. 층/동, 세대수 : 지상5층 / 1동 / 47세대
 - 마. 용도 : 도시형 생활주택(47세대)
 - 바. 주택형별 : 26.763형(4세대), 27.2524형(19세대), 27.4312형(24세대)
4. 사업목적 : 공동주택
5. 사업비 : 금308,588.752천원
6. 사업기간 : 사업계획승인일 ~ 2022.06.20.(사용검사예정일)
7.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일 : 2021. 10. 21.
8. 관계도서 열람방법 : 관계도면은 북구청 공동주택과 및 사업주체가 일반인에게 열람

광주광역시 공고 제2021-1805호

광주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변경)(안)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주민의견청취 공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하여 주민 및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10월 14일

광주광역시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개요

- 가. 용도구역 결정(변경)
 - 개발제한구역(단절토지) 해제 : 총 4개소, 68,692㎡
- 나. 용도지구 결정
 - 집단취락지구 결정 : 1개소, 9,701㎡
- 다.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 지구단위계획구역, 도시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가구 및 획지계획, 건축물 등에 관한 계획 등 결정

2. 열람내용 및 관계도서 : 게재 생략(공람장소에 비치)

- 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도서
- 나.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3. 주민공람 및 의견제출 방법 등

- 가. 공람기간 : 2021. 10. 20. ~ 11. 5. (16일간)
- 나. 공람장소 : 광주광역시청(도시계획과 도시계획상임기획단), 남구청(도시계획과), 북구청(도시건축과), 광산구청(도시계획과), 동구청(도시개발과)
- 다. 의견제출 : 공람장소에 비치된 주민의견서 양식에 의거 서면제출
- 라. 제출기간 : 공람기간 내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광역시청 도시계획과(☎062-613-444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열람내용은 최종 결정고시 된 내용이 아니므로 향후 행정절차 이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광주광역시 공고 제2021-1817호

광주 도시계획시설(공원: 시민근린공원)사업 공사완료 공고

도시계획시설(공원: 시민근린공원) 내 ‘에너지파크 조성사업’이 완료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사완료 공고합니다.

2021. 10. 20.

광주광역시

가. 사업시행지 :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1163-2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1) 종류 : 광주 도시계획시설(공원: 시민근린공원)
- 2) 명칭 : 에너지파크조성사업

다. 사업규모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사업규모(단위:㎡)		비고 (최초결정)
		총 공원면적	금회 시행	
167	시민공원 (근린공원)	A=170,384.9	A=41,750.8	광고 141호 (* 94.12.5.)

라. 사업시행자

- 1) 주소 :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으로 55
- 2) 성명 : 한국전력공사 대표 정승일

마. 사업시행기간 : 2020. 5. 29. ~ 2021. 12. 31.

광주광역시 서부소방서 공고 2021-10호

소방시설관리업 신규등록 수리 공고

소방시설관리업 신규등록에 관한 사항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10. 18.

광주광역시서부소방서장

□ 신규등록수리

등록업종 (등록번호)	상 호 (법인번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	신규등록 수리일자
소방시설관리업 (제 광주시부 2021-1호)	(주)제일소방 (200111-0646485)	이 용 선 (770113-1*****)	광주 서구 상무오월 로3번길 28-1,2층 (쌍촌동,네이처빌)	2021. 10. 18.

끝.